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상시적으로 한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아 생활하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고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특수건설기계

건설 현장 등에서 차량의 구조나 작업 방식이 일반 건설기계와 달라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로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1304호, 특수건설기계의 지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특수건설기계 종류 및 안전작업수칙

도로 보수트럭



- 차대에 원동기, 호퍼, 아스팔트살포장치, 아스팔트혼합제(아스콘) 이송장치를 가진 도로보수 기계
- 통제 도로에서 외부 차량에 의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유형별 제한 속도에 따른 주의구간 길이에 맞게 표시

노면 파쇄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으로 도로를 연속적으로 파쇄하는 파쇄장치와 원동기를 가진 건설기계
- 차체가 높고 소음이 크게 발생하여 주변 작업자의 접근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노면 측정기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으로 도로의 포장상태 등 노면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원동기를 장착한 기계
- 노면의 포트홀(Pot hole) 또는 균열지역 측정 시 도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되 저속주행 우선 실시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 콘크리트혼합장치를 장착한 피견인식 건설기계
- 드럼내부 작업 시 작동기를 빼고 캡의 문을 잠근 후 작동기 휴대
- 잘 보이는 곳에 '드럼내부 작업중' 표시하고 롤러부에 쇠기를 설치하여 드럼이 회전하지 않도록 조치



특수건설기계 종류 및 안전작업수칙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 포장된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기계로 가열장치, 굴착장치, 재생장치 등으로 구성
- 작업 전 작업자 간 수신호 방법 및 신호수와 운전자 간의 신호 방법을 사전에 숙지
- 체인 등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등의 방호장치 확인

수목 이식기



- 수목을 채취하고 운반하는 장치와 주행용 원동기 등을 장착한 기계
- 작업장소 주변 전력선, 지하매설물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 평탄한 곳에 장비를 설치하며 아웃트리거를 반드시 펼친 상태에서 제조사가 정한 나무 크기 이하로 작업 진행

터널용 고소 작업차



- 터널 등 고소작업이 가능한 장치를 가진 것으로 타이어식 차대 위에 원동기 및 붐, 버킷 등을 갖춘 기계
- 작업 전 주변 작업자와 작업 중 신호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후진 시 주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장치 작동 유무를 확인
- 타이어 및 브레이크 관련 장치 수시 점검 실시

트럭 지게차



- 운전석이 있는 주행 차대의 후방에 별도의 작업장치 조종석을 구비하고 마스트 또는 붐을 설치한 기계
- 차량 전복 시 깔림사고 방지를 위해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
-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동 시 포크를 지면과 가까이 내리고 급선회, 급출발, 급정거 등 금지



필수 안전보건교육



노무제공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

- 대상** ·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법** · 작업 배치 전,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실시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시간**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면제** · **교육시간 1/2 면제**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
- **전체면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 내용**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5]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 대상** ·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 작업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
- 이동식크레인 또는 타워크레인 사용작업 등
- 방법** · 작업 배치 전
- 시간**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면제** · **교육시간 1/2 면제**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전체면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내용** · 공통사항 및 각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작업 시 안전관리 사항으로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5]

※ 건설기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기술기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 제40조, 제86조, 제89조, 제91조 ~ 제93조, 제98조, 제99조, 제196조 ~ 제206조
- ⚡ 공단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